

부산광역시사하구을속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5. 9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문화회관의 준공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의 징수기준,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회관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허가사용할 수 있는 회관시설의 범위는 대공연장, 연습실, 전시실 등 기본 시설과 조명시설, 음향시설, 영사기 등의 부대시설로 구분하고,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8조)
- 다. 교육수강료 기준과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라. 회관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 또는 변상의무를 규정함(안제15 및 제16조)
- 마.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
- 바.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책결정 등에 있어 필요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4조 내지 제16조
지방자치법 제127조, 제128조, 제130조, 제135조

나. 입법예고 : 2002. 3. 25 ~ 4. 15 (22일간)

- 예고결과 : 주민의견 제출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에 관한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(이하 “회관” 이라 한다)의 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) ①회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등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운영한다.

②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③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.

④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시설의 관리 및 운영
2. 회관의 사용 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
3.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
4. 기타 회관의 관리·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

제4조(사용범위)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본시설 : 대공연장, 연습실, 전시실, 취미교실, 회의실, 테니스장, 놀이마당
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음향시설, 영사기 등 무대공연 및 행사,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·난방시설

제5조(사용허가)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 라 한다)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사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,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등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,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
3.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
5. 제6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제8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전시설의 사용시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09:00부터 20:00까지로 하며,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9:00부터 19:00까지로 한다.

1. 오전 = 08:00부터 12:00까지
2. 오후 = 13:00부터 17:00까지
3. 야간 = 18:00부터 22:00까지

②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.

제9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같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
2.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

③구청장은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,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수강료) ① “교육수강료” 라 함은 교육수강의 반대급부로 구청장이 정하는 요금을 수강자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.

②회관 이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별표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.

제12조(교육수강료 납부 및 환불) 교육수강료는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월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당월분은 환불받을 수 없다.

제13조(사용중단 신고) 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) ①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.

②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,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회관 사용을 마친 직후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제15조(사용자의 준수사항 등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변상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④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6조(원상회복) ①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·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7조(입장 및 행위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전염성질환자
2.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3.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행위자
4.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8조(회관회원제 운영) ①구청장은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자문위원회설치) ①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울속도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을속도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구분	규모	단위	사용료		비고
			평일	토·일·공휴일	
대공연장	797석	오전	130,000	300,000	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,오후,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의 50%로함 ○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(23:00이후)작업시는 평·토·일·공휴일 차등없이 300,000원으로함 ○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,오후,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함
		오후	180,000	300,000	
		야간	250,000	300,000	
	제1연습실	148.8㎡	1일 오전 30,000 오후 30,000 야간 50,000	좌 동	
제2,3연습실	47.6㎡	1일 30,000	좌 동		
개인연습실	28.86㎡	1일 10,000	좌 동		
전시·관리동(지상1층)	제1전시실	108.9㎡	1일 30,000	40,000	○ 1일이라 함은 오전,오후,야간 모두를 말함
	제2전시실	261.36㎡	1일 90,000	110,000	
	제3전시실	87.12㎡	20,000	30,000	
전시·관리동(지상2층)	취미교실	43.56㎡	1회 20,000	좌 동	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임
	회의실	217.58㎡	1회 80,000	100,000	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이 하나임
부지내	테니스장(8면)	면당	1일 10,000	좌 동	○ 테니스장 월 사용료는 면당 300,000원임 ○ 1일이라 함은 09:00~17:00까지임 ※ 면당 2시간이내 2,000원, ○ 토·일·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50% 가산
	놀이마당	1개소	1회 30,000	좌 동	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임

※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. 다만, 계속사용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.

1. 30분 미만 : 당해 사용료의 20%
2. 30분 이상 1시간 미만 : 당해 사용료의 50%
3. 1시간 이상 :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 구분		단위	사용료	비 고	
피아노	그랜드형(외산)	1회	40,000		
	그랜드형(국산)	1회	20,000		
	어프 라이트	1회	20,000		
무대조명	중강당	1시간	30,000	○ 무대장치 작업 및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%	
무대시설	승강무대	1회	40,000		
	음향 반사판	1회	20,000		
	덧 마 루	1회	20,000		
음향시설	녹음	D·A·T	1회	30,000	○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
		카세트테이프	1회	10,000	○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
	유선마이크	1개	2,500	○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	
	무선마이크	1채널	20,000	○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,000원 가산	
	무선인터컴	1회	20,000	○ 1셋트는 최대 8개	
냉 방		1시간	연료시가로 결정	○ 시간당 연료시가의 10%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	
난 방		1시간	연료시가로 결정	○ 시간당 연료시가의 10%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	
효과시설	드라이아이스	1회 작동시	10,000	○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	
	스모그기	1회 작동시	10,000	○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	
	영사기(35mm)	1시간	20,000	○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	
	빔프로젝트	1시간	10,000	○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	

(주) 위 표중

-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.
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
3. 기 타

시설명 및 구분		단위	사용료(원)	비 고
중계방송	TV	1회	40,000	○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○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 중계방송(사용료) 적용 (소형 Handy cam 8m/m이하 제외)
	라디오	1회	20,000	
○ 무대의상 ○ 대·소도구 ○ 기타 물품		1회	취득가액의 3%	

(주)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.

【별표2】

교육수강료 기준 (제8조의 2관련)

구 분	기 준	금 액(원)	비 고
어린이·청소년강좌	· 과목당 주1~2회 2시간	월60,000원이하	· 재료비 본인부담 · 강의기간 및 횟수 에 따라 금액범위 를 조정할수 있음
취미·교양강좌	· 과목당 주1회 2시간	월60,000원이하	
스포츠·건강강좌	· 과목당 주2~3회 2~3시간	월70,000원이하	
국악·음악강좌	· 과목당 주1~2회 2시간	월60,000원이하	
방학특강	· 과목당 주 1~2회 2시간	월20,000원이하	